공 개

의안번호	제 33 호
의 결 연 월 일	2026. 1. 21. (제 2 차)

의결사항

한국거래소
유가증권시장·코스닥시장·코넥스시장
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

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권 대 영
제출 연월일	2026. 1. 21.

1. 의결주문

한국거래소(이하 “거래소”) 유가증권시장, 거래소 코스닥시장 및 거래소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코스피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법인 등을 확대하고, 코스피시장·코스닥시장·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를 강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법인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 법인으로 확대(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안 제48조 및 제51조)

나. 주주총회 안건별 표결결과(찬성률, 반대·기권 등 비율)를 주주총회 당일 공시하도록 신설(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안 제7조제1항제3호라목,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안 제6조제1항제3호라목,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안 제6조제9호)

4. 참고사항

가.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: <별지1>
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·구조문대비표 : <별첨1>

나.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: <별지2>
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·구조문대비표 : <별첨2>

다.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: <별지3>
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·구조문대비표 : <별첨3>

<별지1>

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3호라목 후단 중 “도입·폐지”를 “도입·폐지,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성 및 반대(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)의 비율”로, “명기하여야”를 “기재하여야”로 한다.

제48조제2항 전단 중 “세칙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”을 “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(이하 “영문공시 의무법인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영문으로”를 “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적용기준, 영문으로”로 한다.

제51조제3항 중 “제48조제2항에 따라 영문공시의무가 있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”을 “영문공시 의무법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별첨1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주요경영사항) ①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(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그 밖에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·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하며,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「상법」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내용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다목, 제2호중 가목(7)·나목(4)·다목(4)·라목(4), 제3호중 가목(1)과 나목(5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.	제7조(주요경영사항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	3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
현 행	개 정 안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라.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결의가 있은 때. 이 경우 사업목적 변경, 사외이사의 선임·해임, 감사(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)의 선임·해임, 집중투표제의 도입·폐지 등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.	라. ---------- ---------- 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도입·폐지,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성 및 반대(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)의 비율---------- ---------- ------기재하여야-----.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48조(영문공시) ① (생 략)	제48조(영문공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한글로 공시한 후 영문으로 공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영문으로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, 공시시한 등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	② ----------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(이하 “영문공시 의무법인”이라 한다)----------. ------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적용기준, 영문으로----------.
제51조(거래소의 공시 등) ①·② (생략)	제51조(거래소의 공시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③ 거래소는 제50조에 따른 점검 결과 제48조제2항에 따라 영문공시 의무가 있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고의,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해당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.	③ ---------- ----- 영문공시 의무법인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.

<별지2>

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3호라목 후단 중 “도입·폐지”를 “도입·폐지,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성 및 반대(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)의 비율”로, “명기하여야”를 “기재하여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별첨2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공시신고 사항)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[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(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그 밖의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·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하며, 이사회의 결의는 「상법」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]의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[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당일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. 이하 제6조의2제1항 단서, 제7조제1항 단서·제2항(사유발생일 당일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, 제12조제4항 및 제30조에서 같다]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다목, 제2호가목의 (9), 제2호나목의 (7), 제2호다목의 (4) 중 채무자가 제3호나목의 (1)부터 (3)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, 제2호라목(7), 제3호나목의 (5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	제6조(공시신고 사항)① ----------

현 행	개 정 안
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.	--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	3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라.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에서의 결의가 있은 때. 이 경우 사업목적 변경, 사외이사의 선임·해임, 감사(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)의 선임·해임, 집중투표제의 도입·폐지 등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.	라. ---------- ---------- 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도입·폐지,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성 및 반대(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)의 비율 -- ---------- ----------기재하여야---.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<별지3>

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9호 후단 중 “도입·폐지”를 “도입·폐지,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성 및 반대(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)의 비율”로, “명기하여야”를 “기재하여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별첨3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공시신고 사항)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[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(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그 밖의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·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한다.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「상법」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]의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당일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(이하 제10조에서 같다). 다만, 제1호나목 및 다목,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, 제3호, 제3호의2, 제5호다목 및 라목, 제6호, 제7호나목의 (2)부터 (4)까지, 제8호 및 제9호(단,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경우는 제외한다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.	제6조(공시신고 사항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
현 행	개 정 안
9.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에서의 결의가 있은 때. 이 경우 사업목적 변경, 사외이사의 선임·해임, 감사의 선임·해임, 집중투표제의 도입·폐지 등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.	9. ----------. ----------도입·폐지,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성 및 반대(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)의 비율----------기재하여야----.
10.·11. (생 략)	10.·11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
소관부서	공정시장과
연 락 처	02-2100-2688